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1. 아래의 유보 목록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그러한 제한을 명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가. 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 나. 적용 가능한 제한을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영국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약속 안함으로 남아 있는) 경제 활동에서 핵심인력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말한다.
-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의 일시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8조 및 제7.19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 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 인력 및 대졸연수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체류기간,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입국, 체류, 직업 및 사회안전 조치에 관한 영국의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은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6.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아래의 목록은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독점과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 주요 기준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공급될 영국이나 그 지역에서의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9.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6. 사업 서비스	
<u>프.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u>	
e) 개인·가정 물품 관련 (CPC 832)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u>F. 그 밖의 사업 서비스</u>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비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비용 차량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 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sup>1</sup>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다음은 제외: CPC 633, 8861, 8866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r) 5. 복제 서비스 (CPC 87904) <sup>2</sup>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sup>1</sup>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sup>2</sup>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6. 운송 서비스	
<u>A. 해상 운송</u>	
a) 국제여객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선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국제화물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머리 미용 서비스 (CPC 97021)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9)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p>분야 또는 하위 분야</p> <p>경우에 한하는 스파 서비스 및 비의료 요법 마사지<sup>3</sup> (CPC ver. 1.0 97230)</p>	<p>유보 사항의 기술</p>
--	------------------

---

<sup>3</sup> 의료 요법 마사지와 열치료 서비스는 6.A.h) 의료 및 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 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 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